※ 작성 시 참고 가능한 ‘‘안내서 다운로드’ 링크: (<https://sv.kibo.or.kr/Distinction/WhatIsDist.do>)

**소셜벤처 판별 자가진단표**

|  |
| --- |
|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를 적용하여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분류 |

**■ 사회성 판별표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사회성 판별표** | | | | |
| **판별 항목** | | **배점** | **평가 점수** | **비고** |
| 1 | 중앙정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 (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) | 100점 | \_\_\_\_\_점 |  |
| 2 | 중앙정부,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| 100점 | \_\_\_\_\_점 |  |
| 3 |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,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 (단,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, 실제 제품·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) | 70점 | \_\_\_\_\_점 |  |
| 4 | 비콥(B-corp) 인증을 받은 기업 | 50점 | \_\_\_\_\_점 |  |
| 5 |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, 추진 중인 기업 | 50점 | \_\_\_\_\_점 | 정관 외 기타 증빙은 50%만 인정 |
| 6 |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, 실행하고 있는 기업 | 50점 | \_\_\_\_\_점 |
| 7 |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‘기업 이윤의 배분’ 및 ‘청산 시 처분 제한’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, 실행하고 있는 기업 | 20점 | \_\_\_\_\_점 |
| 8 |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(재단, 기업 등)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| 20점 | \_\_\_\_\_점 |  |
| 9 |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(재단, 기업 등)4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(조직)이 창업한 기업 | 20점 | \_\_\_\_\_점 |  |
| 10 |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, 상생협약, 협력 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| 10점 | \_\_\_\_\_점 |  |
| 11 |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(기업의 해당 부서)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| 10점 | \_\_\_\_\_점 | 2년이상 5점 |
| 12 | 대표자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| 5점 | \_\_\_\_\_점 |  |
| 13 |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 관련 활동 (대학 동아리, 대학내창업, 공모전 등)을 수행 | 5점 | \_\_\_\_\_점 |  |
| **점수합계** | | **510점** | **\_\_\_\_\_점** |  |

**■ 혁신성장성 판별표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혁신성장성 판별표** | | | | |
| **판별 항목** | | **배점** | **평가 점수** | **비고** |
| 1 | 법령상 인증·확인 보유 기업(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메인비즈기업) | 100점 | \_\_\_\_\_점 |  |
| 2 |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% 이상인 수도권 기업(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%) | 100점 | \_\_\_\_\_점 |  |
| 3 | 중앙정부,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| 100점 | \_\_\_\_\_점 |  |
| 4 |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| 50점 | \_\_\_\_\_점 |  |
| 5 |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6)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 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｢B｣등급 이상인 기업 | 50점 | \_\_\_\_\_점 |  |
| 6 | 등록된 지식재산권(특허권,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 신안권, SW프로그램저작권)을 보유(실시권 포함)하고 있는 기업  \* 단,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| 40점 | \_\_\_\_\_점 | 1건 40점, 2 건부터 건당 5점 추가 |
| 7 |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% 이상인 기업(최근 2년 평균) \* 단,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 | 40점 | \_\_\_\_\_점 |  |
| 8 |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(팀)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| 40점 | \_\_\_\_\_점 |  |
| 9 |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(전문)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| 30점 | \_\_\_\_\_점 |  |
| 10 | 중앙정부의 R&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으로부터 인정을 받 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| 20점 | \_\_\_\_\_점 | 연구개발 전담부서 는 10점 |
| 11 |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(팀)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| 20점 | \_\_\_\_\_점 |  |
| 12 | 기업(또는 재단)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 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| 20점 | \_\_\_\_\_점 |  |
| 13 | 중앙정부의 “혁신성장공동기준”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| 20점 | \_\_\_\_\_점 |  |
| 14 | 자연계 대학교수, 자연계 박사,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 설연구소, 국공립 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 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| 10점 | \_\_\_\_\_점 |  |
| **점수합계** | | **510점** | **\_\_\_\_\_점** |  |